

#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※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: (정당당첨 : 2022.01.07(금) ~ 01.12(수)), (예비당첨 : 2022.01.13(목) ~ 01.15(토))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  
 ※ 배우자 분리세대(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)는 2022.01.11(화)까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, 인터넷 청약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"로 발급)	신청자 구비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·비속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	
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
일반공급 당첨자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 등본상에서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 직계비속	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- 만18세이상~만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- 만30세이상 : 자녀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	
제3자 대리인 신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견본주택에 비치)	견본주택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	신청자 구비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(\*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.)  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
 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☎ 대표번호 : 053) 741-1900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※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: (정당당첨 : 2022.01.07(금) ~ 01.12(수)), (예비당첨 : 2022.01.13(목) ~ 01.15(토))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

※ 배우자 분리세대(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)는 2022.01.11(화)까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, 인터넷 청약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	
	○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기관추천 특별공급	○		해당 기관장의 추천서	본인	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.	
제3자 대리인 신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견본주택에 비치)	견본주택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신청자 구비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(\*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.)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대표번호 : 053) 741-1900

#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- ※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: (정당당첨 : 2022.01.07(금) ~ 01.12(수)), (예비당첨 : 2022.01.13(목) ~ 01.15(토))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배우자 분리세대(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)는 2022.01.11(화)까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, 인터넷 청약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건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"로 발급)	
다자녀 특별 공급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비속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신청자 구비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본인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	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(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)	
	○	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	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재혼·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	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청약 신청자가 「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	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자녀)	만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제3자 대리인 신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건본주택에 비치)	건본주택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신청자 구비
부적격 통보를 받았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(\*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.)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☎ 대표번호 : 053) 741-1900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※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: (정당당첨 : 2022.01.07(금) ~ 01.12(수)), (예비당첨 : 2022.01.13(목) ~ 01.15(토))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

※ 배우자 분리세대(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)는 2022.01.11(화)까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, 인터넷 청약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	신청자 구비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		
노부모 부양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·비속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	
제3자 대리인 신청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자녀	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 로 발급	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견본주택에 비치)	견본주택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	신청자 구비
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(\*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.)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대표번호 : 053) 741-1900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※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: (정당당첨 : 2022.01.07(금) ~ 01.12(수)), (예비당첨 : 2022.01.13(목) ~ 01.15(토))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

※ 배우자 분리세대(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)는 2022.01.11(화)까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, 인터넷 청약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건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	
	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신혼 부부 특별 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	신청자 구비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) *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	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"상세"로 발급	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(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.)	
	○	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	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재혼·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	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	
제3자 대리인 신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건본주택에 비치)	건본주택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신청자 구비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(\*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.)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대표번호 : 053) 741-1900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원본, 재직증명서 원본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전직자	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, • 재직증명서 원본	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 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, 직인날인))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•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	• 국민연금 관리공단 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	•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• 국민연금 관리공단 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•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• 세무서
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•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 날인) 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	•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원본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•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)	• 해당직장	
무직자	•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견본주택 비치) •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을 시)	• 접수장소	

구분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
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,군,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,군,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,군,구청장)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</li> <li>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업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</li> <li>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</li> </ul>											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※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: (정당당첨 : 2022.01.07(금) ~ 01.12(수)), (예비당첨 : 2022.01.13(목) ~ 01.15(토)),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  
 ※ 배우자 분리세대(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)는 2022.01.11(화)까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, 인터넷 청약 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견본주택 비치	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(본인 발급용)		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	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	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	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		
	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비속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(생년월일~모집공고일까지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
생애 최초 특별 공급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	신청자 구비	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·비속의 소득 입증서류) *「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」 참조		
	○		소득세 납부	본인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*「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」 참조		
	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	
		○		혼인관계증명서	직계비속	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	
	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 <a href="http://www.iros.go.kr">www.iros.go.kr</a> 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	
제3자 대리인 신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신청자 구비	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견본주택에 비치)	견본주택 비치	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신청자 구비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(\*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.)
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대표번호 : 053) 741-1900

해당자적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·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원본, 재직증명서 원본	· 해당직장 ·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전직자	·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(직인날인) ※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 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, · 재직증명서 원본	·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·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·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·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(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 날인)또는 월별급여 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, 직인날인))	·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·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· 사업자등록증 사본	·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·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	· 국민연금 관리공단 · 세무서
	신규사업자	·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· 국민연금 관리공단 · 세무서
	법인사업자	·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·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· 세무서
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·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·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·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·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·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	·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원본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·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)	· 해당직장	
무직자	· 비사업자 확인 각서(건분주택 비치) ·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을 시)	· 접수장소	

확인자적	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· 재직증명서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 해당직장 · 세무서 · 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· 사업자등록증 사본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	·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·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 증명서(종합소득세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· 해당직장 · 세무서 · 건강보험공단

구분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
건축물	·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							
	주택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,군,구청장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,군,구청장)
		건축물 종류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
	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
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,군,구청장)							
주택 외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</li> <li>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</li> <li>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</li> <li>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</li> <li>-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(개별공시지가 기준)</li> </ul>							